온종일 돌봄체계 운영·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192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권칠승·정춘숙·장경태

전용기 · 송갑석 · 김철민

강병원 · 박광온 · 한병도

박 정 • 유정주 의원

(11위)

제안이유

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.

이에 「온종일 돌봄체계 운영·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교육·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·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

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 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함(안 제3조).
- 나.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(교육장)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라.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,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, 간식 및 급식 지원,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(안 제 9조)
- 바.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,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사항은 조례로 정함(안 제10조).
- 사.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- 아.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- 자. 교육부장관은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안 제13조).
- 차.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, 한부모·다문화가족,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안 제14조).
- 카.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- 타.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,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- 파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- 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·운영을 위해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(안 제18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, 안 전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온종일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초등단계 학령기(學齡期) 아동"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
 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.
- 2. "온종일 돌봄"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제9조의 교육·보호 등을 말한다.
- 3. "온종일 돌봄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한다.
 - 가.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
 - 나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8조의2에 따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
 -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

- 라.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시설
- 4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관계 중앙행정기관"이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 온종일 돌봄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5조(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 관별로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 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 지사"라 한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

- 하 "시·도"라 한다)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, 「정부조직법」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을 총괄·조정하여야 한다.
-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
- 2. 온종일 돌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
- 3. 온종일 돌봄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
- 4.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
- 5.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
- 6.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
-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 교육감에 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6조(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·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, 시장 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지방교

- 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교육지원 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온종일 돌봄의 수요·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·시행,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광역돌봄협의회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하여 광역돌봄협의회를 둔다.
 - ② 광역돌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며, 위원은 관계 공무원,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,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등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·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·위촉한다.
 - ③ 광역돌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8조(기초돌봄협의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, 온종일 돌봄시설 간 협력 증진, 온종일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의 조사 등을 위 하여 기초돌봄협의회를 둔다.

- ② 기초돌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·군·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, 온종일 돌봄 관련전문가, 관할 지역 내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임명·위촉한다.
- ③ 기초돌봄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9조(온종일 돌봄)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·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.
 - 1. 안전한 보호
 - 2. 간식 및 급식 지원
 - 3.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
 - 4. 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
 - 5.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
 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보호
- 제10조(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등) ①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9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②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,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(지도·감독)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 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

- 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
 - 2.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
 - 3.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
 - 4.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. 홍보 및 교육
 - 5.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 - 6.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 원
 - 7.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· 분석 지원
 - 8.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 -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실태조사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온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)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 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
 -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 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
 -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

-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6.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
- 7.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
- 8. 그 밖에 교사가 추천하는 아동(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에서 온종 일 돌봄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제15조(보호자의 비용 부담)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제16조(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,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등단계 학령 기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비용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종일 돌봄시설, 지원센터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·운영

에 필요한 재정적 ·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 종일 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 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